

수시적성검사통지서(국내)

성 명		생년월일	-
주 소			
면허번호			
출석일시		출석장소	
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			

「도로교통법」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도로교통공단 인

유의사항

- 1.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위 출석 일시·장소에 반드시 출석하셔서 수시적성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2. 2차 통지서를 받고도 90일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4일간 주소지 운전면허 시험장 게시판에 공고하며,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.